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06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이재관 · 박지원 · 이정문
송재봉 · 안도걸 · 박용갑
정준호 · 권철승 · 윤준병
문진석 · 정진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단지의 입주를 원하는 자가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입주시점에 입주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
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38조제2항 신설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6호 중 “주요기반시설계획”을 “주요기반시설계획(전력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5제3항 후단 중 “제38조제5항”을 “제38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에 따라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분양대금(선수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납부에 관한 사

항

6. 산업단지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38조제9항”을 “제38조제10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38조제9항”을 “제38조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분양계획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생략)

<신 설>

 -----.

제38조제6항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에 따라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략)

제53조(과징금)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38조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과징금) ① -----
-----제38조제10항-----

-----.

②·③ (현행과 같음)